

의안번호	2214919
의 퇴 인	김정재의원
회 답 일	2026.4.13.
추계번호	25D6603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 (병과)	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, 육·해·공군 특수병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병대에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를 신설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제1항 (병과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육군, 공군, 해군에 별도로 특수병과를 구분하였으나, 개정안은 해병대에도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 등 3개의 특수병과를 구분하여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현재 각군 및 해병대의 병과별, 계급별 정원 관련 규정은 「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」(대통령령 제31124호) 및 「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」(국방부훈령 제3028호)에 따라, 각군본부에서 계급별·병과별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,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계급별·병과별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
 - 그러나 해병대의 경우, 현행법에 따라 보병, 포병 등 기본병과만 관리하고 있고 특수병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해군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

[표 1] 해병대 병과별 정원

(단위: 백명)

구분	보병	포병	기갑	항공	정보	공병	정통	군수	재정	정훈	군사경찰
장교	12.0	4.4	1.4	1.7	1.0	1.1	1.6	2.5	0.4	0.5	0.5
부사관	30.1	8.0	4.9	1.2	4.6	3.7	6.2	10.6	0.4	0.5	1.3
병	82.2	16.0	7.2	0.5	5.7	8.6	19.9	44.3	-	1.3	2.3

자료: 국방부

- 특수병과인 법무과의 조직 중 하나인 해군 검찰단은 해군 및 해병대를 관할하고 있으며, 이 중 해병대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
 - 현재 해군 검찰단은 군인 47명, 군무원 2명 등 49명으로 구성됨

[표 2] 해군검찰단 조직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합계	군인					군무원
		소계	영관	위관	준사관	부사관	일반직
정원	49	47	7	16	2	22	2

자료: 국방부

- 개정안에 따라 해병대에 별도의 특수병과를 구분하여 신설할 경우, 해병대의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 관련 사무실 운영, 인력증원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해병대 특수병과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국방부는 군제 변화에 대해 미래 안보환경 및 위협, 군사전략 개념, 상비병력 감소 등과 연계하여 정책결정이 필요하며, 군제 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병대 특수병과 신설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설명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